

II

K-UBRC 구축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 및 내용

구분	사업목적	사업내용
K-UBRC 구축	은퇴 과학기술인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지식을 지역으로 환류하여 대학·기업·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	은퇴 과학기술인이 지역 내 대학·기업·연구기관과 팀을 이루어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,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술지도 및 창업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연구단 운영 지원

2. 지원내용

□ 공고 범위 및 사업 구조

- '26년도는 시범사업(100% 국비)이며, '27년 이후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·규모·목표 범위 등을 논의 및 확정 예정

구분	시범사업	본사업
기간	26.10.01. ~ 27.03.31.	27.01.01.~30.12.31.
재원	100% 국비	국비 + 지방비 + 기관부담연구개발비
지방비	매칭 없음	매칭 있음
기관부담 연구개발비	부과하지 않음	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라 부담 (영리기관 참여 시)
단계 구분	시범사업 26.10.01. ~ 27.03.31.	1단계 : 27.01.01. ~ 28.12.31. 2단계 : 29.01.01. ~ 30.12.31. (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,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·예산·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)
추진방식	본 공고를 통해 선정·협약	시범사업 점검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 결정, 전환 시 재협약 예정

*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, 그 결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 여부와 과제목표·내용·구성·연구비·연구기간 등이 조정되거나 연구비 증감, 지원중단,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
** 위 표의 내용은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법령·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지원대상

- 주관연구개발기관 : 권역 내 과기원, 대학, 출연(연), 전문연구기관,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
- 공동연구개발기관 :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경권 소재 대학·연구기관·기업·기술사업화 및 기업지원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

□ 지원내용

- 은퇴 과학기술인의 우수한 역량을 지역으로 환류하여 산학연 협업 촉진

- (인력 및 지식 환류) 은퇴 과학기술인이 대학·기업·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지식 자산을 고도화하고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도를 수행하도록 지원
- (연구단 운영) 은퇴 과학기술인과 지역 혁신주체가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및 연구단 운영비 지원
- (기술애로 해결)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도, 멘토링,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 밀착형 기술 서비스 제공

□ 지원규모

사업유형	세부과제명	연차별 예산(백만원)					
		'26년	'27년	'28년	'29년	'30년	합계
미래유망기술·인력 확보	대경권 K-UBRC 구축·운영	300	1,400	1,400	1,400	1,400	5,900

※ '27년 이후 지원규모는 시범사업 점검결과, 정부예산 및 지방비 확보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: 전액(100%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

- 대학, 정부출연기관,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,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르며 간접비 고시비율이 산출되지 아니한 대학은 직접비의 5%,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로 함
- 영리기관*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퍼센트로 함

*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공기업을 포함)

※ 간접비비율 :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기간 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(현물 부담액, 위탁연구개발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,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) 금액으로 나눈 값

○ 지역자치단체 지방비 매칭 기준

- 2차년도부터 과제당 총연구비의 20%를 매칭하며, 대구시·경북도 각 부담비율은 아래 기준에 따름

대구광역시 소속 기관	경상북도 소재 기관	두 지자체 모두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	대경권 범권역 혁신기관
연도별 해당기관에 배정된 연구개발비의 20%를 대구광역시에서 부담	연도별 해당기관에 배정된 연구개발비의 20%를 경상북도에서 부담	과제 제출 시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선택, 선택된 소재지에 소재한 기관과 동일 기준 적용	연도별 해당기관에 배정된 연구개발비의 10%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각각 부담

□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: 해당없음

□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

-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-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
- 중소·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

지 가능하며,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

-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
 -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
 - 지식서비스분야, S/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
- ※ 첨부 참고자료(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)에 따르되,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

-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: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‘동시수행과제수 제한’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

< 관련법령 및 규정 >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: 제31조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),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, 제35조(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),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과기정통부 고시)
- ‘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(안)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, 2025.10.22.)

- 연구개발성과의 소유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)

-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
-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,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
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
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,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(연구개발성과를 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)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
 -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
 - 외국에 소재한 기관·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
-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
 -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

□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

-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·장비 도입 시 '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'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
※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(red.zeus.go.kr)에 심의 신청
-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·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·장비를 도입할 경우,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,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(zeus.go.kr)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

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□ 사업 추진체계



□ 추진절차



※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

4.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

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	비중(%)
수행기관 역량	• 기술 기반 창업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도	10
	• 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	20
추진계획의 타당성	•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	15
	•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	15
	• 사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	20
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	• 사업 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	10
	•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, 경제적, 지역적 파급효과	10
계		100

※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/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평가방법

-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, 발표평가, 현장 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‘지원가능과제’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‘지원제외’로 분류함
- ‘지원 가능 과제’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‘지원가능과제’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 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※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 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-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(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)이 1:1 이하의 단독·미응모의 경우,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
 -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: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,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

□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: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평가 시 정성적으로 우대할 수

있음

- 대구·경북 양 지역의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대경권 범권역 협력체계를 구성한 경우
- 기존 지역 고경력 과학기술인 및 관련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신규 국내외 우수 고경력 과학기술인 유입계획을 함께 제시한 경우
- 지역수요가 구체적이며 수요기관의 참여·성과활용 계획이 명확한 경우

□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: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
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-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(주관/공동/위탁 책임자 포함)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(1점)

□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: '사업단 운영관리지침'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	■ 최근 3개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(국세청(홈텍스)발급)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*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※ 단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·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,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근거법령	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 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규정	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○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·지침 등

5. 신청방법 및 절차

- ☐ 사업공고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및 DGIST 홈페이지(www.dgist.ac.kr)
- ☐ 신청방법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☐ 접수기간 : '26. 9. 14.(월) ~ '26. 10. 10.(토), 15:00까지(IRIS 시스템 시간 기준)
※ 접수기간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- ☐ 제출서류 :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

번호	서 류 명	서식	제출대상			파일형식
			주관	공동	위탁	
1 (필수)	연구개발계획서	1~4	○	-	-	HWP
2 (필수)	사업자등록증	-	○	○	○	PDF
3 (필수)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5	○	○	○	PDF
4 (필수)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	7	○	○	○	PDF
5 (필수)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7	○	○	○	PDF
6 (필수)	표준재무제표*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	-	○	○	○	PDF
			※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			
7 (필수)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○	○	○	PDF
			※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			
8 (해당시)	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※ 지식서비스분야, S/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	21	○	○	○	PDF
9 (해당시)	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	17	○	○	○	PDF

신청 시 주의사항

-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
-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,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
- 전산 등록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
-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
※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,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 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

☐ 문의처(담당부서)

직급	담당자	연락처	
대경권 지역자율 R&D 사업단 선임행정원	정준영	이메일	jjy7985@dgist.ac.kr
		연락처	053-785-1130
대경권 지역자율 R&D 사업단 행정원	권진원	이메일	jinwonkwon@dgist.ac.kr
		연락처	053-785-1131

6. 기타사항

- ☐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☐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
- 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☐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- 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,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